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公務員條例
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1993. 5. 24.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5月 4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3年 5月 11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17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5月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가. 提案理由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1991. 5. 31, 제4370호)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24조 제6항)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가. '93. 5. 4.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동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년 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할 자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소방직, 기능직)에 한하여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나. 이를 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도 동일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1991. 5. 31(제437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간에 균형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65 |
|----------|-----|

제출년월일 : 1993. 5.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사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1991. 5. 31, 제4370호)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24조 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의2
-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
-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24조(특별휴가) ①~⑤ (생략) | 제24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
| ⑥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5. 24.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4月 13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3年 4月 13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17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5月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가. 提案理由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90. 5. 3., 대통령령 제12,999호)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조례 제12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

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93. 4. 1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3. 2. 5 조례 제1731호로 제정된 동 설치조례는 그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실정으로

'90. 5. 3 대통령령 제12,999호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법규 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280-214('93. 3. 10)로 동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준칙이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사안으로 행정쇄신을 위한 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가결